

## 2025년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소스산업화센터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의 품질 강화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2025년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전통식품산업 중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스톱 상품화 지원으로 전통식품 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판로개척
- 고부가가치 전통식품 발굴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 지원대상: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제조기업

#### ○ 공고기간: '25. 2. 5.(수) ~ 3. 6.(목)

#### ○ 접수기간: '25. 2. 19.(수) ~ 3. 6.(목) 18:00까지 \* 마감(18시)후접수불가

#### ○ 사업기간: 협약체결 후 '25년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함

#### ○ 신청방법: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https://foodpolis.kr/difp>)를 통해 신청·접수

#### ○ 지원규모: 기업 별 최대 20백만원 규모 \* 총 지원규모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지원비율

- 지원비율: 지원금 100%(기업부담금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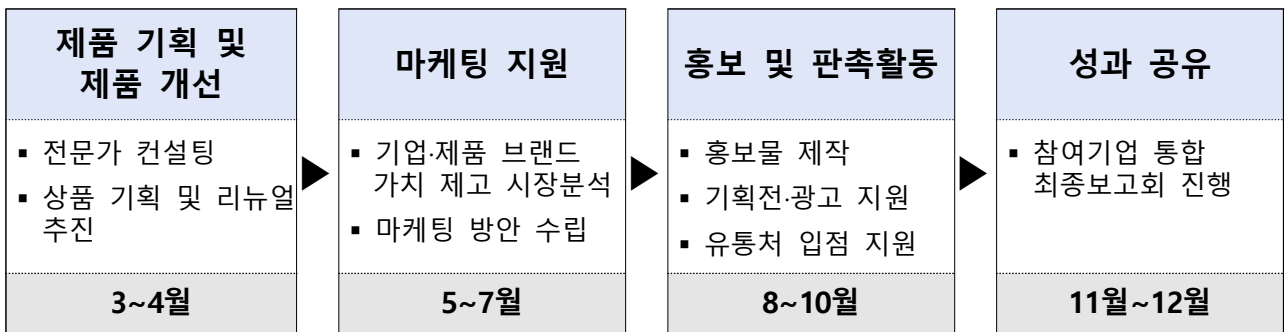
## 3.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제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개선] 포장 설계 및 디자인 개발 등</li> <li>▶ [소스개발] 전통식품 활용한 소스 레시피 개발 (소스센터 활용 시제품 제작 등)</li> <li>▶ [시험분석]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시험분석, 관능평가 등</li> </ul>	식품진흥원 디지털플랫폼 內 식품전문가 Pool, 전문업체 연계 협력
상품기획	▶ [마케팅전략수립] 기업 및 품질인증 제품의 현대화·고급화 위한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전문용역사 선정 및 지원
홍보 및 판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활용 영상, 상세페이지 제작 등</li> <li>▶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획전 광고</li> <li>▶ 리플렛, 카다로그 및 브로슈어, 광고</li> <li>▶ 유통MD 상담 매칭 등</li> </ul>	-

\* 소스개발 및 마케팅 전략수립은 식품진흥원 주관 별도 추진

- 지원절차



-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기획 / 선정 / 정산 관리 총괄</li> <li>▶ 사업 관리, 사업 직/간접 수행</li> <li>* (직접) 진흥원 인력 및 장비 활용 (간접) 컨설팅, 마케팅 지원 전문 기관 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신청 및 선정평가 참석</li> <li>▶ 사업수행 참여</li> <li>* (중간) 사업기간 1/2 지점 (최종) 과제종료일 14일 전</li> </ul>

#### 4. 추진절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절차	내용	해당분야	비고
공고 시작 (2.5.~3.6.)	·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 <a href="https://foodpolis.kr/dfip">https://foodpolis.kr/dfip</a> )를 통한 공고안내	공통	신청기업
사전 상담 (2.5.~2.18.)	· 사업 접수 전 별도 신청을 통해 식품진흥원 담당자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상담 진행 ·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공통 (필요시)	신청기업 식품진흥원
시스템(플랫폼) 접수기간 (2.19.~3.6.)	· 신청기간 마감 후 별도의 서류 보완 기간 없음	공통	신청기업
서류검토 (3.7.~3.11.)	· 필수 제출 서류 구비 여부 검토	공통	식품진흥원
발표평가 (3.12.~3.18.)	·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내.외부 5~7인) 질의응답을 통한 타당성 검증	공통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협약 체결	· 선정평가 의견에 따른 사업비, 기간 최종 확정 및 계획서 보완 후 협약 체결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제출	공통	신청기업
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사업 종료일까지)	· 협약시 계획서에 따른 사업 실시	공통	식품진흥원 컨설턴트 신청기업
중간점검 (사업기간 1/2시점)	· 협약 기간 중간 시점에 과제 진척률 점검	공통	식품진흥원 신청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업종료15일전)	· 협약서에 따른 성과물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결과 최종 평가	공통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 기업부담금 또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공통	신청기업
사후관리	· 사업 성과 활용에 대한 사후 관리 실시 (사업 종료 후 필요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공통	식품진흥원 신청기업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선정평가지 외부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협약시 담당자와 협의 가능함. 단 선정평가에서 책정된 최대 사업기간은 초과하지 못함

## 5.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 신청자격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필수)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통주 제외)
-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2024. 1. 1. 이전에 취득한 기업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동 규정 별표 6 참고)을 구비한 농업법인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총 85항목)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묵류, 구기자차, 건표고, 무말랭이, 꽃감, 엿, 조청, 약식, 고추장, 된장, 간장, 엿기름, 유자차, 참기름, 김치류, 두부, 죽류, 녹차, 식혜, 미숫가루, 삼계탕, 매실농축액, 가래떡, 흑염소추출액, 고춧가루, 등글레차, 누룽지, 대추차, 메밀가루, 도라지 가공품, 도토리가루, 솔잎 가공품, 들기름, 양념육류, 머루즙, 족발, 찰좁, 수정과, 감잎차, 증편, 새알심, 시래기, 뽕잎차,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홍삼가공품, 곡물차,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백삼가공품, 국화차, 막장, 생식, 수육, 백삼, 홍삼, 혼합장, 압착유, 건조채소류, 수제비, 연차, 생강차, 곰국 절임류, 고구마말랭이, 썩차, 두유류, 절임배추, 발효식초, 오미자가공식품, 볶음깨, 떡류, 장아찌류

### ○ 지원제외 대상 세부기준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분야·성격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타사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특성·광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의함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6. 신청방법

○ 접수방법: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https://foodpolis.kr/dip>)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절차 ※

Step 1	Step 2	Step 3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 <a href="https://www.foodpolis.kr/dfip">https://www.foodpolis.kr/dfip</a> ) 접속	회원가입(기업회원) 및 로그인 완료 후 사업 신청	[기업지원사업]-[사업공고] 메뉴에서 사업공고 목록 확인
Step 4	Step 5	Step 6
사업공고 목록에서 신청하실 사업내용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신청사업 정보 입력 ※ 필히 사업별로 지정된 지원 신청서(양식)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 첨부	[등록] 클릭 지원신청 완료, [마이페이지]-[지원사업신청목록]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수정, 선정결과 확인 가능

### ○ 제출 서류

구분	서 식 명	비 고
필수 서류	1 참여신청서(공통)	붙임 1
	2 신청품목 세부정보	붙임 2
	3 사업 세부추진 계획서	붙임 3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4
	5 중복수혜금지약약서	붙임 5
	6 서약서	붙임 6
	7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인증서	-
	8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3개월 이내 발급본	-
	9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	
	10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또는 매출액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매출액 증빙서류 택 1 제출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등)의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 7. 사전상담 \* 사전상담은 필수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 사전상담 진행 기간: '25. 2. 5.(수) ~ 2. 18.(화)
- 사전상담 신청방법
  - 사전상담 기간 내 사업 담당자에게 상담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하여 신청시 진행하며, 필요 서류가 구비된 경우에만 상담 진행
- 사전상담 실시
  - 사업 담당자가 사전상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일정 및 상담방법(대면, 비대면) 협의한 후 상담 진행
  - \* 사전상담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8. 선정평가

- 서류검토
  - 검토목적: 필수 서류 제출 여부 검토 및 사업 적부 평가
  - \* 필수 서류 미제출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발표평가 미진행
  - 검토기간: '25. 3. 7.(금) ~ 3. 11.(화)
  - 검토방법: 식품전문가 등 내·외부위원(2~3인)을 통한 제출 서류 검토
  - 결과안내: 평가 완료 후 발표평가자 대상 안내 예정
- 발표평가
  - 평가목적: 사업계획의 필요성, 적합성, 기대효과 등 평가
  - 일시/장소: 서류검토 종료 후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평가방법
    - 계획서를 포함한 내용으로 발표자료\*(PPT, PDF 등) 준비/발표
    - \* 발표자료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5~7인 내외로 구성되며, 지원 금액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시간: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 사업 내용에 따라 발표는 조기 종료할 수 있으나, 시간 초과는 불가함
- \*\* 평가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될 경우 사전 공지 예정
- 선정기준 \* **[붙임 7] 참고**
- (가·감점을 포함하여)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선정결과: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https://foodpolis.kr/dfip>)에서 확인
- 메뉴: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신청목록]

## 9.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소유권 등)에 따라 진흥원 자체수행 및 위탁용역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선정평가회 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과제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시 사전에 해당분야 담당자에게 위임장[붙임9] 내 해당사유 및 대체 발표자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붙임8] 사유별 제재기준 참고
- 식품진흥원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① 지원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중단"인 과제
  -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 ②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협약 후 과제수행단계에서 포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과제책임자나 과제담당자 등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⑦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전에 적발된 경우
  - ⑦-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
  - ⑦-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회 이상)
  - ⑦-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회 이상)
- ⑧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평가 중 유의사항

- 사전검토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신청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 서류 내 허위 기재 또는 관련 증빙서류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사업 협약 해지/식품진흥원 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0. 담당자 연락처

부서(팀)	담당분야	담당자	연락처
기업지원센터	온라인 접수방법 등 시스템 관련	기업지원센터	063-720-0500 helpdesk@foodpolis.kr
미래식품부	사업관련 세부문의	이혜진 대리	063-720-0681 hileejin@foodpolis.kr

- 붙임 1. 사업 참여신청서(공통)**
- 붙임 2. 신청품목 세부정보**
- 붙임 3. 사업 세부추진 계획서**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 붙임 5. 중복수혜금지확약서**
- 붙임 6. 서약서**
- 붙임 7. 서류검토서**
- 붙임 8. 지원과제 선정평가서**
- 붙임 9. 사유별 제재 기준**
- 붙임 10. 위임장**

【붙임 1】

##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공통)

### [기업개요]

기 업 명			
설 립 일	YYYY.MM.DD.	기업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 <input type="checkbox"/>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 <input type="checkbox"/> 무
홈페이지 주소			
사업 담당자	성명		직위
	이메일		전화
본 사			
공 장			
공장소유	<input type="checkbox"/> 자가 / <input type="checkbox"/> 임차 / <input type="checkbox"/> OEM 등		

### [기업현황]

기업현황 (최근 3개년)	20 年	20 年	20 年
매 출 액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종업원 수	00명	00명	00명



【붙임 2】

## 신청품목 세부정보

<b>제품명</b>			
<b>식품의 유형</b>		<b>구 분</b>	<input type="checkbox"/> 일반식품 <input type="checkbox"/> 건강기능식품
<b>제조사</b>	기업명/주소지		
<b>판매원</b>	기업명/주소지		
<b>제품설명</b>	셀링포인트, 제품개발배경, 제품컨셉을 포함하여 기술		
<b>제품규격</b>	용량(30gx10입), 가로X세로X높이 사이즈(cm)		
<b>주원료/함량 (원료원산지)</b>	해바라기씨(국내산) 40%, 아몬드(캐나다산, 미국산) 20% 등		
<b>상품가격 (VAT포함)</b>	원	<b>판매희망가</b>	원
<b>보관방법</b>	냉장/냉동/실온(택1)	<b>유통기한</b>	제조일로부터 0개월
<b>제품사진</b>			
<b>제품 표시사항</b>	* 표시사항(일괄표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		

<b>신청품목관련 인증내용</b>	<p>예시) 유기농식품(인증번호), 전통식품(인증번호), 생산인증: HACCP 등 * 기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p>
<b>생산시설 및 제조여건</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업체의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시설 규모</li> <li>- 생산인증현황</li> <li>- 주요 생산설비 현황(설비명, 사진 등)</li> </ul> </li> <li>2. 지원품목의 최대 생산능력 및 생산량(톤/연간)</li> <li>3. 지원품목의 주요공정</li> </ol>
<b>조직 및 인력구성</b>	<p>예시) 조직도/생산인력(0명), 제품개발인력(0명), 영업인력(0명) 등</p>

【붙임 3】

## 사업 세부추진 계획서

사업명									
과제명									
제품명									
식품의 유형	소비자가						월		
제조사	기업명/주소지								
판매원	기업명/주소지								
지원 사유 및 필요성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p style="text-align: center;">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사업비 사용계획과 연관되어야 하며, 최종 달성 목표 제시</p> <p style="text-align: center;">ex) 품목제조보고, 디자인 설계도 및 도면, 홍보물 제작, 판촉행사 참가, 시제품 제작 건수 등</p>								
추진일정	내용 및 범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SNS 마케팅 등								
	시제품 제작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계			
제품개선·기획	(포장개선) 패키징 디자인 개선		
	(컨설팅) 패키징 디자인 개선		
	(시험분석) 전통식품 영양성분 분석		
홍보마케팅	(홍보) 홍보물 제작		
	(마케팅) 판촉행사 참석		
시제품제작	(시제품제작) 전통장류 활용 소스 제작		

□ 지원 항목별 주요내용 및 증빙서류(참고)

구분		주요내용	증빙서류
제품 개선	포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포장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료 구입 및 제작 등</li> <li>- 샘플제작 및 구입</li> <li>- 포장디자인 제작</li> </ul>	<p>&lt;시험분석비&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계약서 또는 시험인증신청서 및 접수증</li> <li>② 시험·인증서</li> <li>③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li> <li>④ 견적서, 거래명세서</li> <li>⑤ 입금확인증(계좌이체증명서 등)</li> <li>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li> </ol>
	시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분석 등</li> <li>- 제품개선 관련 시험분석·평가</li> </ul>	
홍보 및 마케팅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홍보 및 온라인 홍보물 제작</li> <li>- 홍보콘텐츠 제작(영상, 카달로그, 사진 등)</li> <li>- 상세페이지 홍보물(디자인 등) 제작·개선</li> <li>- 브랜드 디자인 개발·개선</li> </ul>	<p>&lt;홍보 및 마케팅비&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li> <li>② 계약서</li> <li>③ 견적서, 거래명세서</li> <li>④ 과업지시서</li> <li>⑤ 용역결과보고서(결과물) 및 검수조서(증빙사진포함)</li> <li>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li> <li>⑦ 입금확인증(계좌이체증명서 등)</li> </ol> <p>&lt;전시회(박람회) 참가비&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시회(박람회) 카달로그</li> <li>② 참가 확인 문서</li> <li>③ 비용 납부요청서(임차시)</li> <li>④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li> <li>⑤ 입금확인증(계좌이체증명서 등)</li> <li>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li> </ol>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케팅</li> <li>- 온라인 및 정기간행물 광고, SNS 마케팅 등</li> <li>■ 유통채널 입점</li> <li>- 입점비, 입점 공장심사비</li> </ul>	
	전시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li> <li>- 참가등록</li> <li>- 부스임차 및 장치, 행사용 비품 등</li> </ul>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식품을 활용한 파생상품 개발 및 제작 등</li> <li>- 개발의뢰</li> <li>- 외부장비 사용</li> <li>- 시제품 제작</li> </ul>	<p>&lt;시제품 제작비&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li> <li>② 견적서, 거래명세서</li> <li>③ 과업지시서</li> <li>④ 용역결과보고서(결과물) 및 검수조서(증빙사진포함)</li> <li>⑤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li> <li>⑥ 입금확인증(계좌이체증명서 등)</li> </ol>

【붙임 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 협약체결, 과제 수행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항목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이용목적	신청 및 접수, 협약체결, 과제 수행관리, 수요조사, 성과 및 만족도 조사
보유·이용기간	<b>5년, 미선정기업은 심사후 즉시 파기</b>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년      월      일

소속	성명	직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 중복수혜 금지 약속서

당사는 2025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귀 기관의 지원 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수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직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 등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고,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원본과 동일하며,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서류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며, 변조, 위조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있거나 원본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직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7】

## 서류검토서

기업명		사업명	
-----	--	-----	--

평가항목	제출서류 목록	검토 결과	
		적합	부적합
필수서류 제출여부	<i>제출서류1</i>		<i>(사유: 미제출)</i>
	<i>제출서류2</i>		
	<i>제출서류3</i>		
	<i>제출서류4</i>		
	<i>제출서류5</i>		
	<i>제출서류6</i>		
	<i>제출서류7</i>		

평가항목	검토 결과
지원 적합성	<i>검토 결과 작성</i>

사전검토 결과	발표평가 대상 적합	발표평가 대상 부적합

\* 필요에 따라 양식 내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검토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 지원과제 선정평가서

기업명		사업명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b>과제개요</b> (30) 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 과제 목표 및 필요성 · 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 · 목표 설정의 명확성 · 구체성 · 정량성	10	
	- 과제 범위의 타당성 · 과제 범위 설정과 총괄 목표의 부합성 · 과제의 핵심과 추진내용 간의 연결성 · 과제계획의 신규성	10	
	- 과제 목표의 실현가능성 · 선행연구결과 등 제시된 방법의 구체성 · 과제목표의 달성 가능정도	10	
<b>과제수행</b> (40) 과제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과제 수행계획의 합리성 · 단계별 기술지원계획의 합리성	15	
	- 과제 내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 참여기업(협동수행)과 진흥원 역할 및 구성의 연계성	15	
	- 사업비 규모 · 과제기간 및 과제수행 방법의 적절성 · 사업비, 과제기간, 과제 수행방법의 적절성	10	
<b>과제활용</b> (30)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 과제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 · 성과 활용 방안 및 확산 계획의 구체성	15	
	- 과제 성과의 산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 산업화 가능성 · 기술지원 결과의 경제 · 사회 · 지역적 파급효과	15	

평가의견	
------	--

합 계(총 100점)	점
-------------	---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 사유별 제재 기준

제재 사유	제재기준	비고
1. 협약 후 정당한 사유 <sup>1)</sup> 없이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감점 3점 (2년)	사용한 사업비는 반환
2. 정산보고 등 불성실한 대응으로 진흥원으로부터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감점 5점 (2년)	경고 1회 공문 발송 시 제재조치 사전알림
3. 지원사업 수행내용이 불량하여 중간평가결과 ‘중단’이나 최종평가결과가 ‘불량’으로 나온 경우	참여제한 2년 이내	사용한 사업비는 반환
4.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 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2년	
나. 해외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5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인정 금액 등의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2년	
6. 과제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진흥원과 협의 없이 등록하거나 이전한 경우	참여제한 2년 이내	
7. 지식재산권 등의 기술료 <sup>2)</sup> 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제한 2년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5년	
9.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 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3년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5 와 6]
10.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2년 (간접보조사업자) 참여제한 1년 (보조금수령자)	
11. 그 밖에 지원사업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참여제한 2년 이내	

1)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 ①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이사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 ②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기관)에 없을 경우
- ④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2) 기술료는 기술이전료, 실시권을 말함

